통권 제4호 93.5

항공우주산업동향

1993.5.

사단
법인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목 차

I. 정부관련시책

□ 입법예고, 항공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7
□ 항공기 등록기호 지정요령 개정 ·····8
□ 수출용원재료에대한 관세등환급에관한 특례법시행령중개정령 ····9
□ 수출용원재료에대한 관세등환급에관한 특례법시행규칙중개정 ····11
□ 입법예고, 협동연구개발촉진법제정(안) ·····12
□ 중간핵심기술개발 1년연기 ·····13
□ 한·미 산업기술 협력 추진 ·····14
□ 중소기업 무상 양허할 538개 정부보유기술 확정 ·····15
□ 전략물자 148품목 수출통제 ·····16
□ 상공부 "신기술 2000 계획" 금년 하반기중 수립 ·····20
□ 기술도입신고·인증 절차 간소화 ·····21
□ 한·중 이중과세 방지협정 22조문 항의 ·····21
□ 무궁화호 위성 전송방식 '디지탈'채택 ·····22

II. 협회 및 회원사 동정

1. 협회동정

□ 제2차 이사회 개최 ····· 23
□ 한·미 산업기술협력 추진 ····· 32
□ 수입추천 및 관세감면 확인현황 ····· 33

2. 회원사 동정

□ 삼성항공, 항공업계 최초 ISO 인증 획득 ····· 34
□ 대우중공업, Do-228 TDP 인수계약 ····· 35
□ 대한항공, F-5기 국제개량 사업 참여 ····· 36
□ 현대정공, 회원제 헬기 구입제도 추진 ····· 37
□ 아시아나항공, 울산-제주 정기노선 개설 ····· 37

III. 국내항공우주산업동향

□ BAe사 "Jetstreem ATP" 시범비행 실시 ·····38
□ 러시아산 헬리콥터 도입 움직임 ·····38
□ 대구등 4개 공군비행장에 민항기 운항 및 야간주기 허용 ·····39
□ 교통부, 무선표지소 등 항공보안시설 확충 ·····40
□ 에스포 행사기간 헬기운항 6월부터 개시 ·····40
□ 국내선 항공요금제도 개편 ·····41

IV. 해외항공우주산업동향

□ 미-영 버뮤다 항공협정 갱신될 전망 ·····42
□ 콘티넨탈항공, 보잉사 항공기 92대 구매계획 ····· 43
□ 미국정부 해외항공노선 매각 규제 ·····43
□ 미, MU-2B-60 항공기 프로펠러 교체명령 ·····44
□ 항공기 제조업체 베트남에 로비활동 치열 ·····44
□ 러시아, 영국에서 첨단 군수품 박람회 ·····45
□ 중국, 항공모함 건조 계획 ·····45
□ 중국, 對미·유럽 항공장비 수출 확대 ·····46
□ 일본, 러시아에 항공기술협력단 파견 ·····46
□ 일본 항공기제작사 슈퍼점보기 개발타당성 조사 참여 ·····47
□ 일본 미쓰비시사, 미국에 항공기 엔진 주요부품 공급 ·····47
□ 인도, 제3세대 통신위성 제작사로 미 휴즈사 선택 ·····47
□ 이라크, 여객기 37대 회수 모색 ·····48
□ 싱가폴항공, 지상연결 팩시밀리 서비스 개시 ·····48
□ 말레이지아, 2년내 경비행기 제작 계획 ·····49

V. 참고자료

□ 세계 항공우주산업 전망 <보잉사 예측> ·····50

VI. 알 림

□ 한·러 과학기술협력센터, 단기실용화 검색사업 실시 ·····60
□ 러시아 첨단기술 전시회 및 세미나 ·····62

I. 정부관련시책

□ 입법예고, 항공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1. 개정이유

항공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기업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제고함으로써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기타 시행상 나타난 일부 미비 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항공정비사들이 한정자격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한정자격에 관한 심사를 면제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항공인력의 수급을 원활하게 함 .

나. 항공기에 장비 하여야 할, 구급용구의 점검을 항공기 소유자 등이 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절차를 간소화 함.

다. 국제항공노선의 임시증편 및 전세편 운항절차를 신고제로 전환하여 항공사의운항편의를 제고시킴.

라. 부정기항공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산정시 고려하여야할 운임 등의 산출기준을 폐지하여 기업의 자율성을 제고함으로써 다양한 항공서비스의 제공을 촉진시킴.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993년 5월2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통부장관(참조 : 항공정책과장, 전화 392-950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다. 주소 및 전화번호

□ 항공기등록기호지정요령 개정

◇ 항공기 등록기호 지정요령 ('93.5.11)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항공법시행규칙 제117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 등록기호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임시등록기호"라 함은 신규등록 항공기에 임시로 지정한 등록기호로써 항공기 등록원부에 기재하기 전의 등록기호를 지정한다.

제3조(등록기호) ①등록기호는 항공기의 종류에 따라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등록기호의 지정은 등록의 순서에 의한다. 다만, 항공기의 형식별로 순서를 조정할 수 있다.

제4조 (임시등록기호의 지정 신청)①항공기의 소유자 등은 신규등록예정 항공기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시등록기호의 지정을 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1. 항공기에 외부 도색 작업을 하는 경우
2. 전자장비에 항공기 식별부호를 지정하는 경우
3. 기타 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임기등록기호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는 신청서에 해당 항공기의 형식·제작사·제작번호·도입예정임을 기재하고 항공기 도입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임시등록기호의 지정통보는 서면으로 한다.
④임시등록기호의 지정은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임시등록기호의 신청기한) 항공기 소유자 등은 항공기 등록예정일로부터 12월 이전에 임시등록기호의 지정을 신청 할 수 있다.

제6조 (임시등록기호의 효력) ①임시등록기호는 항공법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②임시등록기호를 지정 받은 이후 항공기의 도입 또는 등록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되거나 기타 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임시등록기호를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부 칙

①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이 고시 시행전 지정된 등록기호 및 임시등록기호는 이 고시에 의하여 등록한 것으로 본다.

□ 수출용원재료에대한 관세등환급에 관한 특례법시행령중 개정령 ('93.5.18)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대한 특례법 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4조의 2제1항중 "5만달러 이하"를 "10만달러 이하"로 한다.
④한국은행 또는 환급은행이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금을 지급할 때에는 환급금의 지급을 신청한 자로 하여금 주민등록증 기타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하여 그가 정당한 권리자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령은 이 령 시행후 최초로 관세등의 환급신청을 하는 것으로 부터 적용한다.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이유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면서 납부한 관세를 제품수출후 환급할 때 환급금액을 원재료별로 일일이 계산하지 아니하고 수출금액을 기준으로 일괄계산하여 환급하는 간이정액환급제도의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등 수출기업의 편익 사항을 위하여 일부 관세환급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내수용으로 수입된 원재료를 사용하여 제조한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종전에는 원재료의 수입 후 1년이내에 수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관세 등을 환급하였으나, 앞으로는 수출용으로 수입된 원재료를 사용하여 제조한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내수용 원재료의 수입 후 1년6월 이내에 수출하면 관세 등을 환급하도록 함(령 제9조제1항)

나. 간이정액환급제도의 적용대상을 수출금액을 기준으로 건당 5만달러 이하에서 10만달러 이하로 조정하여 중소기업의 관세환급편의를 도모함
(영 제14조의2제1항)

<법제처 제공>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시행 규칙중 개정

('93. 5. 18)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제4호중 "출자의 인가를 받았거나 출자의 신고를 한 자를 "외국인투자 또는 출자의 신고를 하였거나 인가를 받은 자"로, "자본재"를 "자본재(우리나라에서 제조·가공된 것에 한한다)"로 하고, 동항제5호중 "물품"을 "물품(우리나라에서 제조·가공된 것에 한한다)"으로 한다.

제6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균세액증명서의 발급을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미 발급받은 평균세액증명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중 "연간 간이정액환급실적이 최근 3년간 계속하여 2천만원이하인 자"를 "전년도의 총 환급 실적이 5천만원이하인 자"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관세등의 환급신청을 하거나 평균세액증명서의 발급신청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면서 납부한 관세를 제품 수출 후, 환급할 때 환급금액을 원재료별로 일일이 계산하지 아니하고 수출금액을 기준으로 일괄계산하여 환급하는 간이정액환급제도의 적용대상 기준중 환급실적기준을 연간 간이정액환급실적이 최근 3년간 계속하여 2천만원이하인 업체에서 전년도의 총환급실적이 5천만원이하인 업체로 확대조정하는등 수출기업의 관세환급에 관한 편익향상을 도모하여는 것임.

□ 입법예고, 협동연구개발촉진법제정법률(안)

('93. 4. 29)

◇ 제정의 취지

'신한국'창조와 '신경제'건설에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과학기술혁신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혁신에 필요한 투자·인력·정보의 규모를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노력과 더불어, 확보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됨. 후자의 노력과 관련하여 산업계·학계 ·연구계의 협동연구개발을 제도적으로 촉진함으로써, 기술혁신에 수반되는 위험부담을 감소시키고 성공가능성을 제고시켜 기술혁신 추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협동연구개발촉진법을 제정코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협동'을 모든 연구개발사업의 핵심요소로 투입하기 위해 협동연구개발사업에 연구개발비의 우선 및 우대지원제도를 강화함.

나. 협동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대학·연구소·산업체의 연구개발요원의 상호파견 및 겸직제도를 도입함.

다. 대학 및 정부출연(연)의 장비와 기자재 등을 저가로 공동사용토록 개방함.

라. 대학과 중소기업간, 연구소와 중소기업간, 대학과 연구소간, 대학·연구소 및 기업간의 협동개발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상호간의 신뢰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통하여 산·학·연 협동연구개발을 체계적으로 확산함.

마. 연구소 및 기업이 대학(원)의 재학생을 일정기간동안 연구개발에 참여시키고 실험·실습 또는 논문연구를 공동지도할 수 있게 함.

바. 협동연구개발과제 및 기관의 알선·중개 등을 수행함으로써 협동연구개발을 전담지원 할 수 있는 기구를 지정하여 지원함.

사. 협동연구개발에 의해 발생하는 산업재산권 등의 귀속주체를 설정하고 정부출연(연)은 참여중소기업에게 일정기간 무상실시를 허용토록 함.

□ 중간핵심기술개발 1년 연기

◦ 정부가 금년 새로운 기술개발전략으로 계획했던 중간핵심기술개발사업(Medium Tech)이 예산부족 때문에 내년으로 연기

◦ 과학기술처는 연구개발비용이 크지 않으면서 품질향상에 효과가 큰 사업의 현장기술개발을 위해 중간핵심기술개발 13개 과제를 선정, 연구개발에 나설 계획이었으나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금년에는 62억원 규모의 시범 사업만 추진하고 대부분 과제를 내년으로 미루기로 결정.

◦ 93년 특정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
- 특정개발연구사업비: 총1050억원 (과기처 예산기준)
- 첨단기술개발사업(G-7프로젝트)개발대상 11개 과제: 총4219억원
- 재원: 과기처 (특정연구개발사업비) 500억원
  상공자원부 1193억원
  정부투자기관 504억원
  민간 2013억원

◦ 국책연구개발 사업:

- 지능형 컴퓨터 등 5개 사업에 총399억원(정부 158억원, 민간213억원)의 개발자금을 투입, 그중 과기처는 45억원을 지원.
- 정부출연연구소들이 자체적으로 과제를 선정하는 첨단요소기술개발사업에 299억원을 투입.

- 국제공동연구개발 사업은 러시아·중국과의 합의과제를 중심으로 원자력연구개발에 44억원, 연구기획평가사업에 30억원을 각각 지원.

◦초 정부 및 지방자치기관 예산 및 금융기관의 채권발행을 통해 조달한 재원(1조4천억원)중 일부를 중간핵심기술개발에 쓸 계획 이었으나 이 자금을 전액 중소기업구조개선용으로 전용.

□ 한-미 산업기술협력 추진

◦ 상공자원부는 김철수장관이 지난 4월 방미때 미국측에 제시한 산업기술협력을 구체적으로 추진할 계획

◦ 이를 위해 5월6일 박운서 제1차관보 주재로 산업연구원, 산업기술정보원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한·미 산업기술협력 확대방안회의 개최

◦ 이에 따라 업종간 협력 증진을 위해 업종별 협의회 구성계획

◦ 양국 관련 업계 및 협회가 공동으로 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주요국책연구개발에 업계의 공동참여를 촉진키로 함

◦ 상공자원부는 기술이전 촉진을 위해 9월15일-17일, 무역진흥공사 주관으로 '제1차 한·미 첨단기술교류시장(Techno-Market' 개최 계획

◦ 한·미 산업협력 기금조성 계획

◦ 미국을 비롯한 외국기업의 한국내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외국인투자자유지역<FIZ>설치계획

◦ 미국은 이와 같은 한·미 산업기술협력이 일본을 견제할 수 있을 것으로 해석

□ 중소기업에 무상 양허할 538개 정부보유기술 확정

◦ 정부는 신경제 100일 계획에 따라 중소기업에 무상으로 양허할 정부출연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 및 특허 538개를 확정함

◦ 이에 따라 5월중 해당기술을 중소기업에 양허하고 기업화를 위한 자금, 현장기술, 인력훈련을 지원 계획

◦ 양허될 기술은 특허 69개, 기술469개등 총 538개로 출연(연)별 기술 설명회를 거쳐 5월중에 업계신청을 접수하고 6월에 대상기업 선정

◦ 기술양허 조건
- 출연(연) 단독소유기술 : 무상제공, 기업화 성공시 기술료 면제
- 출연(연) 기업공동소유기술 : 해당기업과 협의후 기술로 면제
- 외국과 공동소유한 기술 : 국내는 무상, 해외는 상대국과 협의해 무상지원

◦ 양허기술기업화 자금
- 기술개발자금 : 과학기술진흥기금 144억원 이율 6.5% (한국종합금융)
- 시설 및 운전자금 : 중소기업 구조개선자금 총 1조 3200억원
  시설: 연6%, 운전: 시중금리 (중소기업 진흥공단)

◦ 과기처는 기술무상양허과제와 별도로 245개 기술지도과제를 선정해 현장지도 또는 기술훈련사업을 실시키로 함.

◇ 항공우주분야 양허기술

1. 한국과학기술연구원

- 우리별1호, 2호의 지상국용 송수신 안테나 개발
- 우리별1호 송수신용 모델 개발
- 우리별1호 송수신용 TNC 개발

2. 항공우주연구소

- 고성능 이동체용 안테나 및 디지탈 부호기 설계제작
- 무선원격제어 및 데이터 측정시스템 개발
- 항공기 부품(C-Frame)의 소형 가공 및 품질평가 기술
- 중·소형 Impeller 설계 / 제작기술

□ 전략물자 148품목 수출통제

◦ 오는 10월1일부터 총148개 품목에 달하는 전략물자 수출에 대해서도 수입과 같이 전략물자수출입통제제도 (COCOM)의 규제를 받아 관련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아야만 수출이 가능.

◦ 정부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COCOM(대공산권수출통제위원회)회원국들이 첨단제품의 생산이 가능하게 된 우리나라를 포함한 선발개도국에 대해 COCOM체제에 대한 협력을 요구하고 있음에 따라 전략물자 수입 뿐만아니라 수출에 대해서도 규제를 실시하기로 함.

◦ 상공자원부는 이를 위해 이에 관한 근거규정을 지난해 개정한 대외무역법(93년7월1일발효)에 반영한데 이어 '전략물자 수출입공고'를 오는 7월1일자로 고시,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오는 10월1일부터 시행키로 함.

◦ 규제대상 전략물자 (총148개 품목군)
- 일반산업용 물자중 고도의 첨단기술제품으로서 군수용으로 전환이 가능한 이중용도품목
- 총기류 미사일등 군사용 물자 21개 품목군, 플루토늄등 핵물질 및 원자로등 핵관련 장비 24개 품목군

◦ 독립국가연합·중국·베트남·북한·쿠바등 16개 국가의 경우 전략 물자 수출이 품목에 따라 금지(군수물자 및 핵관련물자) 또는 원칙적으로 금지(일반산업용 물자)

◦ 미국·영국·일본 등 코콤회원국 및 협력국 24개국에 대해서는 관련 전략물자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장의 허가를 받은 후 수출 가능.

수 출 물 품	수 출 허 가 기 관
일반산업용 물자	상 공 부
군수물자	국 방 부
핵관련물자	과 기 처

◦ 상공자원부는 이같은 전략물자 수출규제로 인한 업계의 불편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 일정한 자격(기업이 자체적으로 수출을 통제하고 임직원에 대한 교육 및 감사제도를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내부통제제도를 운영하는 기업)을 갖춘 업계에 대해서는 1년동안 포괄적으로 수출을 허가, 개별허가에 따른 불편을 해소시켜 줄 계획.

◦ 품목분류상 형식적으로는 전략물자에 속하지만 제품의 성능·규격 등이 통제대상 전략물자의 수준이하인 품목을 수출자의 신청에 따라 일괄적으로 공고,전략물자 수출확인등에 따른 불편을 해소시킬 계획.

◦ 그 동안 전략물자는 수입에 한해 규제, 90년 7월1일부터 수입업체가 허가 없이 제3국으로 유출하지 않을 것을 우리정부가 수출국에 보증하는 전략물자 수입증명서 제도를 실시.

◦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규제가 새로 시행되더라도 일반산업용물자의 경우 규제대상중 30여개 품목만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고 이 품목들도 이미 북방국가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기본지침(90년 제정)에 의거, 대공산권 수출이 금지돼 왔으며 우리의 주요 교역 국인 미·일 ·EC등의 국가는 모두 코콤의 회원국이라 이들 국가에 대한 수출은 대부분 수출 허가가 필요 없어 수출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을 것이며

◦ 군수물자는 기존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현재도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출하고 있고 핵관련물자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품목이 극히 일부에 불과, 수출통제로 인한 영향이 거의 없음.

- 상공자원부는 일반산업용 물자의 경우는 성능과 기술수준이 통제대상 전략물자의 수준에 미치지 않더라도 전략물자 해당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이 예상되지만 비해당품목을 별도로 공고, 수출허가로 인한 업계의 불편을 해소해 나갈 계획.
- 상공자원부가 동서냉전의 종식, 코콤이 완화되는 추세에 있음에도 불구, 이번에 전략물자 수출에 대해 새로 규제를 실시하기로 한 것은 그 동안의 기술발전으로 우리나라도 과거 선진국의 독점 생산 품목이었던 첨단제품의 생산이 가능하게됐고 코콤의 수출통제대상국가인 러시아등 북방국가와의 교역이 증가하고 있어 분별 있는 수출통제의 필요성이 커진 때문.
- 특히 미국을 비롯한 코콤회원국들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선발개도국에 대해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 것을 비록 최근에는 이란·이라크·시리아·리비아 등을 수출통제 국가로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부 제기되는 등 새로운 통제의 필요성도 대두되는 것을 반영한 것.
- 코콤은 제2차세계대전후 공산권의 세력이 급속 팽창하는 것을 우려한 미국이 대 소 군사력의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전략차원에서 1949년 11월 미국 및 유럽6개국을 중심으로 설립, 공산권 국가들의 군사력 강화에 직결되는 첨단 및 이중물자와 고도기술의 대공산권 수출을 규제하는 활동을 하고 있고 현재 회원국은 미국·일본·독일·영국 등 17개국, 협력국은 스위스, 홍콩 등으로 운영

◇ 전략물자 수출제한 내용

전략물자 수출제한지역 구분

지 역	국 가 명
「가」 지역	독립국가연합(CIS), 리트비아,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몽고, 북한, 불가리아, 베트남, 슬로바크, 아프가니스탄, 알바니아, 에스토니아, 중국, 체코, 쿠바, 폴란드
「나」 지역	그리이스, 노르웨이, 네덜란드, 뉴질랜드, 독일, 덴마크, 룩셈부르크, 미국 벨기에, 스위스, 스웨덴, 스페인, 영국, 오스트리아, 이태리, 일본, 에이레, 캐나다, 터키, 포루투갈, 프랑스, 핀랜드, 호주, 홍콩
「다」 지역	「가」지역 및 「나」지역 이외 지역의 국가

국가별·품목별 통제요령

구 분	품 목 수	「가」 지역	「나」 지역	「다」 지역
○ 일반산업용물자	103개			
┌민감품목	(29개)	원칙적 금지	허 가	허 가
└기타품목	(74개)	원칙적 금지	허가대상제외	허 가
○ 군수물자	21개	금 지	허 가	허 가
○ 핵관련물자	24개	금 지	허 가	허 가

전략물자의 품목수와 주요품목

구 분	품목	주 요 품 목 명
총 계	148	
제1부 일반산업물자	103	
1장 신소재	16	-불소화합물, 복합구조물, 비 불소중합물질, 흡수체, 금속합금, 윤활유, 탄소 및 섬유조직소재
2장 소재가공	10	-베어링, NC선반운전반, 연삭기, 방전가공기, 이온주입 생산장비, 직선.각측정장비, 로보트
3장 전자설계	15	-기억IC, 반도체 제조장비, 반도체 시험장비, 반도체 제조용 절연도료
4장 컴퓨터	6	-하이브리드컴퓨터, 디지탈컴퓨터, 신경컴퓨터, 광컴퓨터
5장 전기통신	9	-전기통신용 전송장비, 광섬유, 위상배열 안테나, 광섬유프레폼
6장 센서	15	-광센서, 레이저, 중력계, 고성능카메라, 자기계, 정밀도측정장비
7장 항법, 항공 전자공학	9	-관성항법장비, 자이로, 지구측지위성수신장비, 고도계
8장 해양기술	4	-잠수정, 수중관측시스템, 로보트, 소음감소시스템
9장 추진장치	19	-항공가스터빈엔진, 터빈날개제작경비, 시뮬레이션장비 비파괴검사장비
제2부 군수물자	21	-각종화기, 사격통제장비, 생물.화학적 작용제, 군용폭발물과 그원료, 군용에진, 군용항공기, 헬리콥터, 낙하산, 헬멧등 방탄장비, 군사훈련 시뮬레이션장비

구 분	품 목 군 수	주 요 품 목 명
제3부 핵관련장비 및 물질	24	
1장 핵물질	12	-농축우라늄, 중수소, 중수, 원자력용 흑연, 리튬, 하프늄, 베릴륨, 트리륨
2장 핵시설	6	-우라늄동위원소 불리장치, 가스원심분리기, 레이저 동위원소 분리장치, 플라즈마 분리장치, 원자로, 핵연료 가공장치
3 핵관련장비	6	- 중성자발생시스템, 불소생산용 전해조, 원자로용 발전장비, 리튬동위원소 분리장치, 트리튬 생산장비

□ 상공자원부 '신기술 2000 계획' 금년 하반기중 수립

◦ 정부는 산업기술개발촉진을 위해 현재 추진중인 생산기술개발사업을 착실히 진행하는 한편 기술자립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신기술 2000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기술개발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연구개발에서 사업화에 이르는 전과정을 체계적으로 담당하는 '기술개발종합지원센터'의 설립을 적극검토.

◦ 이동훈 상공자원부 차관은 4.27일 전경련이 주최한 최고경영자 월례조찬회에서 '중장기 산업정책방향'이란 특강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산업의 구조조정 및 경쟁력 강화를 추진해 나감에 있어 핵심요소는 기술개발'이라고 강조

◦ 이와 관련, 정부는 기술개발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지원자금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신기술제품의 품질인증제도 및 품질보증제도 도입등 종합지원계획을 추진하며 오는 97년 까지 계속되는 '신기술 2000계획'을 금년 하반기 중에 수립할 방침

◦ 이 차관은 '다가오는 21세기에는 컴퓨터와 통신기술의 정보화혁명이 산업 및 경제분야 뿐 아니라 공공행정과 국민생활 전반에 걸쳐 급속히 확대될 것'이라고 전제하고 '정보화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부가통신사업등정보화를 뒷받침하는 산업에 대해 제조업 차원의 지원 책을 강구하며 중소기업의 자동화 및 정보화에 1조3천억원을 지원하는 한편 산업활동과 관련한 주요업무에 EDI를 도입,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임.

□ 기술도입 신고·인증 절차 간소화

◦ 세계적인 기술보호주의 추세 속에서 선진국의 對韓기술견제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것에 대응, 정부는 기업이 기술도입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최근 기술도입절차를 간소화함.

◦ 개선된기술도입 절차 :

- 기술도입 신고 :
  기술도입(10만달러초과)중 계약기간 및 1년 이상으로 정액기술료가 30만달러이상 경상기술료가 5만달러이상이면서 순매출액의 3%이상, 조세면제신청 등 3가지 경우에 해당하거나 방위산업기술등은 주무부 신고절차를 거쳐야 함.
- 외국환 은행 인증 :
  ①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기술도입, ②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만 기술대가가 30만달러 미만 (정액), ③착수금이 5만달러미만이거나 순 매출액이 3% 미만(경상)인 거래는 외국환은행인증을 거쳐야 함.
-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
  국가간 거래인 기술도입 계약이 공정거래에 위배되는 내용이 있는지 여부를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①원자재 부품 설비구매선 제한, ②판매수량·창구·가격 등 15가지를 조사. 단,기술도입이 주무부의 신고를 받는 경우는 주무부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사본을 제출해주고 있어 외국환은행에서 인증을 받는 기술도입업체만 직접 제출하면 됨.

□ 한·중, 이중과세방지협정 22조문 합의

◦ 재무부에 따르면 한·중 양국은 지난4월말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위한 2차실무회담을 갖고 총 29개협정문중 7개조 문을 제외하고 22개조 문에 합의

◦ 양국은 특히 이번 실무회담에서 시술사용료에 대한 원천지국세율을 10%로 인정해 과세가 이중으로 되지 않도록 함.

◦ 아직 합의되지 않은 조문은 건설공사 기간 및 간주세액공제등 7가지인데 정부는 우리나라가 주 진출국인 점을 감안, 중국이 과세하지 않는 사업장의 공사기간을 1년으로 (중국6개월 주장) 추진중이며 중국의 간주세액적용요구도 가급적 인정치 않는 다는 방침아래 추후 3차 실무회담을 갖기로 함.

□ 무궁화호위성 전송방식 '디지탈' 채택

◦ 95년 4월 발사하게 될 무궁화위성은 디지탈 방식으로 전송키로 결정.

◦ 체신부는 26일 위성방송 전송방식자문위원회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건의한 디지탈 방식을 검토한 결과, 국내 기술 및 산업발전에 디지탈 방식이 가장 좋다고 보고 이를 채택키로 하고 검토결과를 통신위성사업추진위원회(위원장·체신부장관)의 인준을 거쳐 5월초에 공고할 계획.

◦ 일부 업체가 강력하게 채택을 주장했던 아날로그 방식은 이미 정착된 기술로 신뢰성은 뛰어나지만 위성의 활용도가 극히 낮고 미래기술개발의 여지가 적어 채택되지 않음.

◦ 체신부 관계자는 '선진각국이 90년대 후반이후에 발사하게 될 방송위성에는 대부분이 디지탈 방식을 채용할 것이고 방송위성관련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디지탈방식의 채택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 체신부는 이와 함께 올해 안에 관련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디지탈 위성방송의 기술수준과 채널 수를 확정키로 함.

◦ 이와 관련, 체신부가 현재 검토하고 있는 디지탈 위성방송의 채널 수는 현재의 국내 기술여건을 감안, 중계기당 2개 내지 3개를 수용할 수 있어 6-9개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

II. 협회 및 회원사 동정

1 협회동정

□ 제2차 이사회 개최

1 일　　시: 1993. 5. 25
2 장　　소: 협회 회의실
3 참 석 자: 이대원 회장외 10명
4 의결사항:
- 제1호 의안 : 신규회원 가입(안)
- 제2호 의안 : 협의회 규정(안)
- 제3호 의안 : 수입추천수수료 징수기준 개정(안)
- 제4호 의안 : 다목적 실용위성 개발타당성 조사연구 용역 실시계획(안)

5 회의결과

◇ 제1호 의안 : 신규회원 가입(안)

- 본 협회 가입을 신청한 신라상사(주) 외 5개 법인은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에 의거 사업신고하였거나 신고 중에 있는 항공우주 관련 제조업체로서 항공우주산업과 협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법인으로 사료되어 정관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어 정회원으로 가입 승인코자 제안.

- 본 협회 정관 제9조(회원가입)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신라상사(주) 외 5개 법인의 정회원 가입을 승인 의결

- 단, 동 회원은 1993년 6월 1일부터 가입한 것으로 함.

◦ 신규가입 정회원사

회 사 명: 신라상사(주)
대표이사: 박재범
본사주소: 서울 중구 충무로 1가
공장주소: 울산시 남구 옥동
종업원수: 179명
주요생산품목: 섬유, 무역, 컴퓨터, 초경량항공기
항공우주부문 생산품목: 동력 활공기, 초경량 비행장치, 소형항공기
국내외 주요 거래처: AVID(미국), S.N.A(미국)
사업신고 일자: 1993.2.11

회 사 명: 서울차체공업(주)
대표이사: 진석정
본사주소: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공장주소: 광주시 서구 내방동, 경남 창원시 팔용동
종업원수: 579명
주요생산품목: 자동차품(특장차 적재함), 항공기 부품, 방산품
항공우주부문 생산품목: DO-328 동체, P3-C 부품가공
국내외 주요 거래처: 대우중공업
사업신고 일자: 1993.5.8

회 사 명: 우주항공산업
대표이사: 김 기 주
본사주소: 경남 김해군 한림면 명동리
공장주소: 경남 김해군 한림면 명동리
종업원수: 28명
주요생산품목: 항공기 치공구 및 부품제조
항공우주부문 생산품목: 항공기 치공구 및 부품제조
국내외 주요 거래처: BOEING, 대한항공, 한진중공업
사업신고 일자: 1993.4.8

회 사 명: 영신산업(주)
대표이사: 홍 의 석
본사주소: 전남 목포시 석현동
공장주소: 전남 목포시 석현동
종업원수: 176명
주요생산품목: 섬유 및 수산자재
항공우주부문 생산품목: 특수 보강섬유, 고분자 PE 랏셀 편직
국내외 주요 거래처:
사업신고 일자: 1993.4.27

회 사 명: 현대항공산업(주)
대표이사: 허 남 균
본사주소: 경남 창원군 동면 송정리
공장주소: 경남 창원군 동면 송정리
종업원수: 20명
주요생산품목: 기체 부품 제조
항공우주부문 생산품목: STRINGER CLIP, 기체판금부품
국내외 주요 거래처: BOEING, 삼성항공
사업신고 일자: 1993.4.8

회 사 명: (주)한화
대표이사: 오 재 덕
본사주소: 서울 중구 장교동
공장주소: 대전시 유성구 외삼동
종업원수: 3,700명
주요생산품목: 추진제 및 관련 추진기관 제조
항공우주부문 생산품목: 유도미사일·과학관측로켓·발사체 고체·액체 추진기관 및 부품
국내외 주요 거래처: 삼성항공, 기아기공, 금성정밀, 삼미종합특수강, 국방과학연구소
사업신고 일자: 신고중

◇ 제2호 의안 : 협의회 규정(안)

본 협회 회원업체로 구성되는 사업분야별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규정을 본 협회 정관 제28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제안 다음과 같이 제정함

협의회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의 분야별 협의회에 관련된 명칭,기능,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① 협의회는 현 사업분야 또는 향후 사업 추진 분야가 동일한 업체간 구성된다.

② 분야별 협의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 기체 협의회
2. 엔진 협의회
3. 전자,보기 협의회
4. 우주 협의회
5. 소재 협의회

③ 각 분야별 협의회는 의장사와 간사사를 둔다

제3조 (성격) 이 분야별 협의회는 회원사간 자율 협의기구이다.

제4조 (기능) 각 분야별 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협의 심의하여 전문위원회에 건의한다.

1. 동종 업체간의 공동 사업에 대한 관심사항 협의
2. 사업 추진상의 애로 및 건의사항 도출
3. 기타,각 분야별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임기) 의장사와 간사사의 임기는 1년으로 연임될 수 있다. 다만,의장사,간사사가 임기중 변경된 경우에는 전임사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임무) ① 의장사는 협의회 회의진행을 주관하며 협의회의 활성화에 총괄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② 간사사는 협의회의 소집과 회의진행의 보조업무를 담당하며,의장사 부재시 그 역할을 대행할 수 있다.

제7조 (협의회 소집) 소속 회원사의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의장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협회를 통하여 의장사가 소집한다.

제8조 (의견청취)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회의에 초청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 (통고) 의장사는 회의 개최시 일시, 장소, 토의 안건 및 그 내용을 회의 3일전에 서면으로 각 소속회원사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다만, 위급사항에 대하여는 전화 등 기타 방법으로 통고할 수 있다.

제10조 (가입 및 탈퇴) ① 협의회 신규가입 희망사는 서면으로 분야별 협의회에 복수로 가입 신청을 할 수 있고,소속회원사 1/2의 찬성으로 가입 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탈퇴는 자유자재이고,재 가입은 소속회원사 2/3의 찬성을 필요로 한다.

제11조 (기타사항) 협회는 협의회의 모임을 정례화 하도록 유도하고 장소를 제공하며, 협의회의 옵서버 자격으로 참가 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1993년 3월 1일로부터 소급시행한다.

◇ 제3호 의안 : 수입추천수수료 징수기준 개정(안)

항공기 및 동부분품 수입추천 수수료 징수기준 개정(안)을 본 협회 정관 제28조 제8호의 규정에 의거 이사회 의결을 거쳐 상공자원부에 승인 신청함

1. 현행 수수료 부과 기준

- 기 본 요 율 : US 달러당 0.3원(수입가격 × 0.3)
- 최고 수수료 : 수입단가가 10만달러 이상 되는 품목은 10만달러에 해당하는 수수료 적용

2. 문 제 점

- 항공기 제조산업의 국산화율이 제고될 수록 수수료부담은 가중됨

('93. 2. 수입추천 사례)

구 분	수입단가 ($)	수 수 료 (원)
완제기 (1대)	4,000천	30천
조립용 부품	2,700천	195천

- 수수료의 최저 한도가 없어 최소한의 인건비에도 미달하는 소액 (1,000원 이하) 수수료가 발생

('93. 1. 1 - '93. 5.14 수수료 징수 현황)

수 수 료 금 액	건 수	금 액 (원)
1,000원 미만	32	11,354
1,000원 이상 - 10,000원 미만	50	227,179
10,000원 이상	23	1,215,196

3. 개정

구 분	현 행	개 정(안)
기 본 요 율	U$ 당 0.3원	U$ 당 0.3원 단, 비회원사인 경우 25%의 추가요율
최고 수수료	수입단가가 10만$ 이상 되는 품목은 10만$에 해당하는 수수료	수입단가 50만불 이상 되는 품목은 50만불에 해당하는 수수료
최저 수수료	없음	수수료가 10천원 이하시 10천원 수수료 부과
단 가 적 용	동일부품 단가 적용	동일품목 단가 적용 × 수량

◇ 제4호 의안 : 다목적 실용위성 개발타당성 조사연구 용역 실시계획(안)

국책사업으로 추진코자하는 인공위성 개발 사업의 타당성 및 개발 방안을 조사 연구하여 대 정부 건의 함으로써 우주산업 발전과 회원사 권익보호에 기여 할 수 있는 용역 사업 계획을 의결

1. 사업추진 배경
   - ◦ 인공위성 국내개발추진의 당위성을 도출하고, 개발모델 및 개발방안 등을 조사연구하여, 중형항공기 개발타당성 조사 및 개발사업과 병행추진할 필요성이 있음
   - ◦ 현재 인공위성개발타당성 조사연구 사업비의 정부예산지원이 불가능하므로 부득이 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의 예산으로 최소한의 비용을 부담하여 전문기관에 외부 용역
2. 용역의 목적
   - ◦ 인공위성 개발사업은 세계 공통적으로 국가주도사업이며 사업결과에 따른 사회·경제적 효과가 심대하며

◦ 특히 개발대상기종의 성능, 개발방법, 국내외 시장구조에 대한 심층적 검토와 판매전략에 대한 사전검토가 필수적이므로, 이를 심도 있게 조사, 분석하기 위함

3. 용역사업의 개요

가. 대 상

◦ 21세기 우주산업의 주역인 저궤도위성
- 350 ~ 500kg급 경량 인공위성
- 400 ~ 1,200km 고도의 저궤도용
- 다목적 실용위성
· 이동통신용, HDTV방송용
· 국토개발, 단지조성, 항만건설 자료조사
· 광물 및 해양자원 탐사
· 환경감시체제 등

나. 목 표

◦ 인공위성 국내개발의 경제적, 기술적 타당성 검토
◦ 국내개발대상기종의 외형 및 성능 등에 대한 개념 정립
◦ 국내개발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취해야 할 전략적 최적 접근방법 도출

다. 기 간 : '93. 6. 1 ~ 10. 31(153일)

라. 연구내용 및 범위

◦ 주요국가의 개발사례 분석
- 중국, 불란서, 러시아, 미국 등
◦ 국내개발사업의 비용 대 효과 분석
- 개발비용, 생산 및 운용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산정
- 국내외 시장구조 분석 및 최적기종 선정
- 국내 설계, 제조 기술수준 및 도입필요기술 분석
◦ 국내개발대상기종의 기술적 개념 도출
- 이용목적, 고도, 중량 등
- 위성본체, 위성탑재체, 발사체 등

◦ 개발방안 검토
- 국내독자 또는 국제협력개발의 타당성 분석
- 개발생산 및 시장구조

4. 용역기관

가. 선정기관 : 한국항공우주연구소(소장 : 홍재학)

◦ 설립년도 : '89. 10.
◦ 기관성격 : 과기처산하 정부출연연구소
◦ 규 모 : 총인원 152명(연구원 80명)
◦ 주요기능 : 항공기개발 및 우주기기개발과 관련된 연구업무

나. 선정사유

◦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제17조에 의한 국내 유일의 항공우주기기 개발 전문기관임
◦ 지난 3년간 인공위성 개발, 설계와 관련된 연구업무를 수행해 왔으므로 동 연구조사에 대한 충분한 경험과 능력을 가지고 있음
◦ 또한 동 연구소 우주개발사업부는 우주산업분석, 시장구조분석, 기술 및 경제성분석 업무가 뛰어남

5. 용역결과 활용방안

◦ 현재 추진 중인 항공우주산업개발기본계획 및 발전전략의 정부추진사업 결정에 활용
◦ 사업추진시 인공위성 국내개발을 위해 우리가 취해야할 전략적 최적접근방법 모색
◦ 외국의 인공위성개발사례 연구를 통해 국내우주산업의 중장기적 발전방향 모색
◦ 인공위성 국내개발사업의 타당성조사로는 첫번째 시도로서 각종 인공위성개발사업의 지침서로 활용가능
◦ 2000년대 주역으로 예상되는 저궤도위성 개발, 국내 인공위성 이용산업에 참고자료로서 활용

6. 향후 추진계획

◦ '93. 5. : 항공우주연구소에 용역 발주
◦ '93. 7. : 중간용역보고서 제출받음

◦ '93. 8. : 우주협의회 및 정책위원회 개최
- 중간용역보고서 분석 및 보완
◦ '93. 9. : 보고서의 내용을 항공우주산업정책협의회에 정책건의(건의자:협회)
< 항공우주산업정책협의회 >
- 구 성 : EPB, 재무부, 국방부, 상공부, 교통부, 체신부,과기처
- 임 무 : 보고 및 건의내용의 검토
◦ '93.10. : 보고서 내용의 수정보완
◦ '93.11. : 항공우주산업정책협의회 개최
- 임 무 : 최종보고서를 토대로 인공위성 국내개발에 대한정책 보고서 제출
◦ '93.11. : 항공우주산업정책심의회 개최
- 임 무 : 정책협의회에서 재출한 정책보고서를 심의, 의결 및 예산확보 등 필요조치 강구

□ 한·미 산업기술협력 추진

가. 추진일정
◦ '93. 5월말 : 각 분야별 세부추진계획 확정
◦ '93. 2/4분기 : KOTRA - FCS간 MOU 체결
◦ '93. 6월 : 한·미 재계 회의시 우리입장 전달
(이때 우리의 입장을 담은 책자발간 배포 : KIET주관)
◦ '93. 5~12월 : 분야별로 한·미간 협의체구성 운영
◦ '93. 9. 15~17 : High Technology Transfer Fair 개최
◦ '93. 10월 : 한·미 산업기술협력을 위한 Techno-Mart 개설
◦ '93. 11~12월 : '93 실적평가 및 '94 계획 수립·시행
◦ '93. 12월 : '한·미 산업기술협력 전략' 종합보고서 완료

나. 주요내용(협회 및 업체 추진계획)
◦ 업종별 협의회 구성·운영
- 양국 업계간 정례협의기구 구성·운영
- 전시회 참가를 통한 협력관계 강화
- 업종별, 투자, 기술협력단 운영

◦ 업체간 산업협력추진(협회, KINITI, KIET)
- 양국 업체의 1:1 협력 추진을 위한 타당성 조사 실시
- 성공 가능성이 큰 협력대상 분야에 대해 정부의 기술개발 또는 사업화지원
- 첨단 기술분야의 과제에 대한 한·미 업계간 공동기술 개발 연구

□ 수입추천 및 관세감면확인 현황

<단위: 1,000 US$>

구 분	관세감면확인		수입추천		계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계	41	93,751	118	267,812	159	361,563
'93.1	7	15,498	14	320	21	15,818
'93.2	8	11,428	30	10,792	38	22,400
'93.3	8	26,189	30	121,794	38	147,983
'93.4	9	12,722	17	652	26	13,374
'93.5	9	27,914	27	134,254	36	162,168

2 회원사 동정

□ 삼성항공, 항공업계 최초 ISO 인증 획득

◦ 삼성항공은 국내 항공업계 처음으로 국제 1)ISO 인증기관인 영국 2)BSI-QA로부터 창원 항공기엔진·부품 전공장에 대해 ISO 9002 인증을 획득

◦ ISO 9000 시리즈는 국제표준화기구인 ISO가 지난 '97년 제정한 품질보증에 대한 국제표준으로 공산품은 물론 소프트웨어, 서비스 등 전산업에 적용되고 있는 범용적인 규격

◦ 삼성항공은 급변하는 경영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제수준의 품질경쟁력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 ISO인증 획득을 위한 별도의 팀을 발족하고 추진한 이래 1일 창원2공장내 항공기 엔진조립, 엔진부품제작, 기체부품제작 및 조립 등에 대해 ISO 인증을 받음

◦ 삼성항공은 ISO인증 획득으로 항공기엔진 및 기체부품의 조립·제작 등 항공기 중요분야에 대한 생산과 품질을 국제적으로 인증받음과 동시에 치열한 국내외 항공업계 경쟁에 있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게 되었으며, 품질경영 정착을 위한 전사원의 품질기강 확립 및 체질개선의 일대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

◦ 최근 EC 경제통합과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등 국제경제 블럭화 현상으로 무역장벽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해외 바이어들도 품질인증 표시인 ISO인증을 요구하고 있어 국내외 항공업계는 ISO인증 획득에 적극 나서고 있는 실정

1) ISO :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rganization
2) BSI-QA : British Standards Institution-Quality Assurance

□ 대우중공업 Do-228기 TDP 인수계약

◦ 대우중공업은 항공사업본부장 Do-228기의 TDP(Technical Data Package) 인수계약을 도니어측과 5일 체결

◦ 대우중공업은 도니어측의 Do-228기 TDP제공대가로 도니어328기 동체 개발 및 생산납기를 준수키로 했다.

◦ 대우중공업은 지난88년 도니어사(최종조립과 날개제작), 이탈리아의 에어마키사(전방동체)와 위험공동부담(Risk Share)방식으로 DO-328기 개발에 착수, 항공기 동체 생산을 맡았으나 생산설비(8백만달러)등을 포함한 투자규모가 워낙 크고 판매전망이 불확실한데다 잦은 사양변경으로 사업 포기를 검토했었다.

◦ 도니어사는 91년 Do-328 시험기를 제작, 올해 내로 미연방항공국(FAA)의 인증을 받아 양산에 들어갈 계획이었으나 대우 측의 사업포기 검토로 생산차질을 우려, 동체내기준수를 조건으로 항공기제작기술을 제공키로 했다.

◦ Do-228기는 81년 시험기 제작이후 84년 5월 FAA인증을 거쳐 91년말까지 41개국에서 2백1대가 판매됐으며 현재도 생산중인 도시간(City to City)단거리커뮤터기로써 조종석 2석과 승무원석 여객석19석등 22명이 탈 수 있다.

□ 대한항공, 캐나다 브리스톨사와 제휴, F-5전투기 국제개량 사업 참여

◦ 대한항공은 5월 13일 영국 롤스로이스그룹의 자회사인 브리스톨社와 F-5전투기 개조사업 참여를 위한 합의서에 서명

◦ 국내 F-5 전투기 개량사업 주계약자인 대한항공은 국방부가 예산부족으로 우리 공군의 F-5 전투기 개량사업을 연기하기로 결정한 것과는 관계없이 사업을 진행할 방침

◦ F-5 전투기 개량사업은 모델과 개조정도에 따라 대당 150만달러에서 400만달러에 달해 세계시장규모는 2조5천억에서 6조5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

◦ 현재 캐나다에서 F-5 전투기 성능개량사업을 진행중이며 이스라엘, 네덜란드 등에서도 개량사업을 추진할 계획

◦ 브리스톨사는 87년부터 캐나다 공군의 F-5 전투기 50여대를 성공적으로 개조, 이 분야의 사업실적을 보유한 회사임

□ 현대정공, 회원제 헬기 구입제도 추진

◦ 현대정공은 자체 생산하는 11인승급 BK117 헬리콥터의 신규수요 창출을 위해 국제 여행사와 손잡고 여행사가 회원을 모집해 헬기를 공동 구입하고 현대정공은 정비나 운항 등 위탁관리를 맡아 고가의 헬기를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해 수요를 확대하려는 전략

◦ 헬기를 공동소유한 회원은 년5억~6억원에 달하는 정비 유지비를 공동부담(회원이 30명이면 1천8백만원 정도)하고 시간당 사용료를 내면 비영리 목적에 자유롭게 이용

◦ 헬기의 회원제 구입 이용은 일본에서는 일반화되어 여행사들이 이를 운용하고 있음

□ 아시아나항공, 울산-제주 정기노선 개설

◦ 아시아나항공은 지속적인 지방항공 노선망 확충 계획의 일환으로 지난 3.16일 서울-울산 정기노선에 이어 5.8일 울산-제주 노선을 신설

◦ 아시아나는 이 노선에 B737-500 항공기를 투입, 매일 1회 왕복운항하고 서울-광주, 광주-제주 등 광주관련 노선의 기종을 모두 250석급의 B737-500으로 변경키로 결정

III. 국내항공우주산업동향

□ BAe사 "Jetstreem ATP" 시범비행 실시

◦ 영국의 Brithsh Aerospace사는 5.24일 터보프롭 커뮤터 항공기인 "Jetstreem ATP"의 시범비행을 실시

◦ 항공우주연구소와 협회 및 관련인사 50여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는 서울항공이 주관하였으며 국내에서 진행중인 중형항공기 개발계획에 합작생산 및 시장참여를 목표로 시작한 것

◦ 동사에 의하면 현재 개발예정인 50인승급 지역간 터보프롭 운송기인 Jetstream 51은 현재 국내노선 취항중인 B737, F100등의 기종과 비교할 때 운용비가 절반수준이며 단거리에서는 속도차이가 없어 국내 소도시간을 연결하는 지역간 운송에 최적임을 강조

구 분	규 격
전 장	26 m
전 고	7.6 m
날 개 길 이	30.6 m
최 대 이 륙 중 량	22,930 Kg
최 대 착 륙 중 량	22,250 Kg
최 대 적 재 중 량	6,967 Kg

□ 러시아산 헬리콥터 도입 움직임

◦ 최근 러시아제 헬기를 구입하고자 하는 업체가 협회에 수입추천등 헬기구입에 대한 문의가 많음

◦ 아직 정식으로 도입 신청을 한 회사는 없으나 대기업 2개사를 포함 7여개사에서 전화 및 방문상담 하였음

◦ 특히 산림청의 헬기 도입 입찰에 응한 대우중공업, 한라중공업, 제일교역, CRT 아메리카 등 무역회사는 러시아산 헬기로 입찰

◦ 이들 회사는 러시아의 헬기가 서방의 헬기에 비해 가격이 절반 수준이고 이륙중량이 크다는 장점을 도입 이유로 설명

◦ 우리나라에는 구 공산권의 항공기가 민간운송용으로 도입된 선례가 없어 상공자원부는 국방부 및 교통부와도 사전 협의하여 수입추천에 신중히 대처할 계획

□ 대구등 4개 공군비행장에 민항기 운항 및 야간주기 허용

◦ 국방부는 최근 공군과 민간항공사가 함께 사용하는 대구·광주·사천·포항 등 4개 공군비행장에 5월부터 5개월간 5편의 민간항공기 운송과 야간주기를 허용

◦ 이는 교통부가 항공업계의 의견을 수렴, 국방부에 요청한 사항으로 민항기의 공군공항 야간주기가 허용될 경우 민간항공기의 주기장 부족 난이 줄어들고 조조운항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 교통부는 광주공항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각각1편씩 조조운항 증편을 허용하고 포항과 대구공항은 대한항공에, 진주공항은 아시아나항공에 조조편 운항을 인가 할 계획

◦ 교통부는 서울에서 이들 지방공항으로 가는 마지막 비행기들의 출발시간도 오후 8시 전후로 조정할 것을 검토

◦ 국방부는 한계에 이른 군용비행장 수용능력과 급증하는 민항기 수송수요 해결을 위해 앞으로 관계 부처와 협의, 민간 전용 비행장을 신설하고 활주로를 복수로 건설하는 등 군 작전과 임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한 민간기 사용 확대를 계속 추진 할 계획

□ 교통부, 무선표지소 등 항공보안시설 확충

◦ 교통부는 예천항공무선표지소를 신설하고 강원항공무선표지소 등 5개 항공표지소시설을 현대화 하고 광주공항에 무선표지시설을 설치하는 등 항공기 안전운항의 토대 마련

◦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항공기가 주로 이용하고 있는 안양-포항간의 항공로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권고하는 안전기준에 미흡해 항공로 중간지점인 예천공항 인근에 항공무선표지소를 신설

◦ 항공로 구성 시설간의 거리가 국제기준인 1백13해리보다 길었던 서울-제주간 항공로의 중간지점인 광주공항에 새로운 무선표지시설을 설치해 항공기의 항로이탈 가능성을 줄임

◦ 대관령에 있는 강원항공무선표지소와 안양항공무선표지소, 포항항공무선표지소, 부산항공무선표지소, 제주항공무선표지소 등 5개 항공무선표지소의 시설을 컴퓨터화된 최신 장비로 교체, 정밀도를 대폭 향상시킴.

□ 엑스포 행사기간 헬기운항 6월부터 개시

◦ 6월부터 대전엑스포 행사장과 서울의 김포공항 및 잠실, 부산의 김해공항 및 수영만을 연결하는 4개의 헬기노선이 개설되며 한국항공, 서울항공, 삼성항공, 현대정공 등 4개 부정기항공운송업체가 운항할 계획

◦ 이를 위해 교통부는 대전, 부산시측과 협의, 대전엑스포 행사장 부근의 갑천 고수부지와 부산 수영만에 헬리포트와 여객편의시설을 마련중

◦ 엑스포 헬기의 운임은 기종과 운항횟수, 운항대수가 결정되지 않아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운항업체들의 자체 산정에 따르면 1인당 편도운임은 서울-대전간 6만원선, 부산-대전간 9만원 선이 될 것으로 전망

◦ 운항시간은 시속 2백25Km를 기준으로 할 경우 김포공항에서는 38분, 잠실에서는 36분, 김해공항에서는 53분, 수영만에서는 55분정도가 될 것임

□ 국내선 항공요금제도 개편

◦ 국내선 항공요금 체계를 현재의 단순거리 비례제에서 기본요금제로 변경할 계획

◦ 교통부는 현행 국내선 항공요금 체계가 단순거리 비례제이기 때문에 서울-부산, 서울-제주 노선을 제외한 대부분의 노선이 운송원가에도 못 미치는 적자노선이라는 국내항공사의 의견을 수용, 항공요금 신고지침에 기본요금제 도입을 포함시킬 계획

◦ 기본요금제가 도입되면 지금까지 2만원 안팎이었던 서울-군산, 서울-속초등 대부분 노선의 요금인상이 확실시되며 서울-대구, 서울-포항, 서울-광주 등의 요금도 인상될 전망

◦ 그러나 서울-제주, 서울-부산간의 요금은 인상되지 않을것임

IV. 해외 항공우주산업 동향

□ 미-영 버뮤다항공협정 갱신될 전망

◦ 1977년 체결되어 미국과 영국 사이에 16년간 지켜졌던 버뮤다항공협정이 각종 제한적인 규정을 철폐하여 항공운송에 시장원리가 적용되도록 변경할 계획

◦ 미국은 버뮤다조약 중 세계의 항공중심지인 런던 히드로 공항에 미국의 American Air Line 및 United Airline과 영국의 British Air만 운항할 수 있도록 된 것을 미국의 모든 항공사에 히드로 공항을 개방하라고 요구

◦ British Air사의 경쟁력 저하를 우려한 영국은 미파산법의 보호아래 영업중인 콘티넨탈항공이나 TWA 같은 부실기업에 히드로 공항을 개방할 수 없다고 거부

◦ 미국은 영국과 조속한 시일 내에 항공협정을 타결하고 프랑스·독일·일본 등에도 이와 유사한 항공협정을 체결 한다는 복안

◦ 일부 국가들은 이러한 미국 항공사들의 시장확대를 막기 위해 자국항공사 보호정책에 고심

◦ 프랑스 정부는 미국과의 쌍무협정을 거부하고 새로운 협정의 체결을 요구하고 있으며 독일, 대만, 일본 등 일부 국가들이 미국 항공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음

◦ 이같은 항공시장 보호정책은 세계적인 불황과 경영난이 심한 유럽과 아시아 각국의 항공사들이 자국 정부에 대해 시장보호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기 때문

□ 콘티넨탈항공, 보잉사 항공기 92대 구매계획

◦ 콘티넨탈항공사는 45억달러 상당의 보잉사 항공기 92대의 구매계획을 발표

◦ 이런 대규모 항공기 구매는 파산보호신청을 해놓고 있는 이 기업의 재기전략의 하나로 침체에 빠진 미 항공기제작업체에 활력을 줄 것으로 기대

◦ 구매할 여객기는 B737기 50대, B757기 25대, B767기 12대 및 B777 차세대 여객기5대 등

◦ 콘티넨탈에 대한 수주로 보잉사의 올해 항공기 수주대수는 총107대(65억1천만달러)로 증가

□ 미국정부 해외항공노선 매각 규제

◦ 미국 정부는 수백만 달러의 자산이 된 해외 항공노선을 다른 항공사에 매각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방법을 고려중

◦ 미 운수부는 정부가 할당한 해외항공로를 항공사가 자기 자산과 마찬가지로 다른 항공사에 팔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인가의 문제를 포함, 정부의 국제노선 정책을 전면 재검토

◦ 이같은 항공노선 판매금지 방안은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항공정책을 변경함과 동시에 유나이티드항공, 아메리카항공, 델타항공 등 대형항공사의 자산가치를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

◦ 판매금지 조치가 실시될 경우 자금난을 겪는 항공사는 더욱 곤란해지고 재정이 튼튼한 항공사는 이익을 볼 것임

◦ 재정난에 시달리던 항공사는 자금 동원수단으로 종종 항공노선 판매에 의지해 왔으나 이 조치가 취해질 경우 그 길이 막히게 되며 우량 항공사는 항공노선을 확장할경우 이 조치로 인해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됨

□ 미, MU-2B-60 항공기 프로펠러 교체명령

◦ FAA는 일본의 미쓰비시사가 제작한 쌍발엔진 터보프롭 항공기 MU-2B-60의 프로펠러를 검사 또는 교체할 것을 명령

◦ 이같은 명령은 이 기종의 항공기가 4.19일 아이오와에서 추락, 교통안전국 조사반의 조사후 발표

◦ 교통안전국은 이미 6주전 FAA에 대해 MU-2B-60 항공기를 포함한 다수 항공기의 프로펠러에 이상이 있음을 경고

◦ MU-2B-60 항공기는 세계적으로 117대가 있으며 그중 80대가 미국에서 운용중

□ 항공기 제조업체 베트남에 로비활동 치열

◦ 미국의 대 베트남 금수조치로 베트남은 그동안 신형 여객기를 구입하지 못하였으나 작년 12월 미국이 베트남 금수조치를 일부 완화하여 세계적 항공기 제조업체들이 베트남 진출에 노력

◦ .베트남의 94년 대형항공기 구매계획은 8대이며 매년 50%씩 항공기 보유대수를 증가할 계획

◦ 아직 보잉이나 에어버스 등과 구매계약을 하지는 않았으나 Lockheed나 MD사는 이미 구매대상에서 제외

◦ 베트남은 국내선에 투입할 소형여객기의 구입을 위해 BAe 및 SAAB사와 교섭중

□ 러시아, 영국에서 첨단 군수품 박람회

◦ 러시아 방위산업 당국은 서방의 경화를 벌어들이기 위해 5. 24 - 5. 27일 영국 버밍엄에서 군수품 박람회를 갖고 그 동안 비밀사항이었던 군수물자와 무기들을 염가 처분

◦ 200개 방위산업체가 참가하는 금세기 최대의 무기 바겐세일에 러시아만이 보유한 기술, 제조공법, 사용법 등이 전시

◦ 1000여점의 전시품과 100건의 기술 및 공법에는 일류신 96-M 장거리 여객기, 합성 다이아몬드 고정밀 의료진단장치, 로켓기술, 레이저, 인공위성기술, 핵연료기술, 핵에너지 개발기술 등이 포함

□ 중국, 항공모함 건조 계획

◦ 중국은 2000년까지 중형 항공모함 2척을 자체건조, 항공함대를 창설할 계획

◦ 중국은 74년부터 항공모함의 작전·조직·지휘계통 등의 연구에 착수 91년말 열린 전해군 공작회의에서 중국 최초의 항공모함 2척을 건조하기로 최종 결정

◦ 한때 우크라이나 등 외국으로부터 항공모함을 구입하는 문제도 검토되었으나 40~50억달러의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는 계산에 따라 8억달러를 들여 중형 항공모함을 자체 검토하기로 결정

◦ 건조 계획중인 항공모함은 갑판에 20기, 함대에 22~28기기의 전투기를 탑재할 수 있는 규모로 항공함대까지 포함 전체예산은 18억7천5백달러로 추산

◦ 중국은 항공함대를 창설하기 위해 이미 잠수함 탐지용 '소나'등의 개발을 비롯한 전투기의 공중급유훈련, 해병대의 결성, 항공모함 착함훈련등과 함장을 포함한 항공모함 승무원의 양성에 착수

□ 중국, 對미·유럽 항공장비 수출 확대

◦ 중국은 93년 5억5천만 달러의 항공장비를 수출할 계획
◦ 중국이 92년 수출한 항공기는 5억2천만 달러이며 25%는 동남아와 남미에 판매된 것
◦ 수출한 항공기는 MD-83기 4대와 YUN-12기 등으로 MD-83기는 중국에서 조립되어 서방에 최초로 임대된 항공기
◦ TWA에 임대된 동 항공기는 미국의 생산가보다 10~20% 낮은 가격으로 생산된 것

□ 일본, 러시아에 항공기술협력단 파견

◦ 일본은 5월말 러시아에 항공기술개발협력단을 파견
◦ 이번 사절단은 미쓰비시중공업의 히네노데쓰오 국장을 단장으로 항공기제작사 대표 및 통신산업성 관계자 30여명으로 구성
◦ 일본이 러시아에 항공기술개발 협력단을 파견하는 것은 대공산권 수출통제조정위원회(COCOM)가 민간항공기 부문을 통제품목에서 제외한 지난 91년 이후 처음이며 일본이 러시아에 파견하는 산업사절단으로서는 농기계, 조선에 이어 세번째

□ 일본 항공기제작사 슈퍼점보기 개발 타당성 조사 참여

◦ 일본의 3개 항공기 제작사들은 미국의 보잉사와 유럽의 에어버스 컨소시엄이 추진중인 슈퍼점보 제트여객기의 개발 타당성 연구에 참여할 계획
◦ 지난 4월 21일부터 미국을 방문중인 미쓰비시중공업 간부인 히네노유주루씨가 보잉사에 일본 기업들의 참여 희망을 통고했으며 보잉사는 원칙적으로 일본의 제안을 받아들임
◦ 나머지 2개 일본 기업은 후지중공업과 가와사키중공업이다.

□ 일본 미쓰비시社, 미국에 항공기엔진 주요부품 공급

◦ 일본의 미쓰비시중공업은 10일 미국 P&W사가 개발한 항공기 엔진의 주요 부품인 연소기 공급 계약에 합의

◦ 미쓰비시를 비롯한 9개의 일본회사와 그 외의 외국회사들이 이 엔진의 부품들을 만들어 오고 있으나 터보팬 엔진의 핵심 부품인 연소기는 그 동안 P&W사가 독점 생산해옴

◦ 미쓰비시사는 내년 초 PW4000 엔진제작에 착수할 예정, 동 엔진은 보잉747, 767, 777 및 에어버스 A300, A310, A330 그리고 맥도널 더글라스 MD-11기 등에 정착된 것

◦ 미쓰비시는 현재 P&W사 엔진부품들을 제작해 매년 2백억엔을 벌어들이고 있으나 이번 계약으로 연간 생산량을 2000년까지 4백억-5백억엔까지 기대

□ 인도, 제3세대 통신위성 제작사로 미 휴즈사 선택

◦ 인도네시아는 지금 추진중인 제3세대 통신위성체제(PALAPA C)를 위해 미국 항공기 메이커인 휴즈사의 HS 601 통신위성 2대를 구입키로 결정

◦ 이 계약은 휴즈사가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 외곽의 다안 모고트에 있는 위성통제 시설을 현대화하는 것과 PALAPA C의 제3위성에 대한 완성도 포함된 것

◦ 지난 72년부터 인도네시아 위성제작에 참여, 이 나라가 지금 운영중인 제1세대 및 2세대 통신위성 제작을 전담해온 휴즈사는 대당 2억달러에 제3세대 통신위성 2대를 오는 91년 7월과 96년 1월에 각각 발사할 예정

◦ 레이더송수신기 34대를 장착한 3세대 위성들은 활동범위가 인도네시아 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와 중국, 호주 일부지역에까지 이르며 인도네시아 정부와 민간투자자가 설정한 PT. 사텔리사가 99년까지 운용

□ 이라크, 여객기 37대 회수 모색

◦ 이라크관리들은 지난 91년에 걸프전 이래 해외에서 발이 묶여있는 37대의 이라크 여객기들을 회수하기 위한 외교활동을 개시

◦ 이들 여객기는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하기 직전 피해를 막기 위해 미리 외국의 여러 공항에 피신시킨 것이며 현재 이들 여객기가 훼손되어가고 있음

◦ 유엔제재 위원회는 이들 항공기가 유엔의 대 이라크 경제제재 대상의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반환의 반대하고 있는데 오브라이언 위원장은 이라크측 요구를 제재위원회에 회부하겠다고 약속

◦ 제재위원회는 15개국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원국들로 구성돼있음

□ 싱가폴항공, 지상연결 팩시밀리 서비스 개시

◦ 싱가포르항공 (SIA)은 13일부터 세계 민간항공사상 처음으로 여객기와 지상을 잇는 팩시밀리 서비스를 시작

◦ 5월13일 싱가포르-런던간 노선에 보잉 747-400여객기의 여객기에서 처음 시작한 이 서비스의 요금이 페이지당 15달러

◦ 이 서비스는 싱가포르, 영국, 노르웨이 상공의 인공위성을 사용

◦ SIA는 지난 91년 9월부터 역시 세계 민간항공사상 최초로 운항중인 여객기와 지상간의 전화서비스를 시작한 바 있음

□ 말레이시아, 2년내 경비행기 제작 계획

◦ 말레이시아는 앞으로 2년이내에 경비행기를 제작할 계획

◦ 모하마드총리는 이날 수도 콸라룸프르 남쪽 150km떨어진 말라카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말레이시아가 항공기제조사업의 일환으로 경영위기의 처한 호주의 한 경비행기 회사를 매입했다"고 발표

◦ 말레이시아가 최근 2년간 모두 1천여만 달러를 들여 매입한 호주의 경비행기 제조회사는 'Eagle Aircraft사'로 소유형태는 정부와 국영회사인 '페트로나스사가 '각각 50%의 주식지분을 보유

◦ 당초 정부는 이글사 전체 주식중 50%지분만을 구입하려 했으나 말레이시아가 경비행기 산업시대에 대비해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라 국영 페트로나스사와 함께 이 회사를 모두 사들이기로 결정

◦ 그러나 제3국이 호주내 항공기 회사를 인수할 경우 호주 정부의 사전 승인을 얻는 절차가 있으므로 구매절차를 마치더라도 이글사가 곧바로 말레이시아의 양도되는 것은 아님

V. 참 고 자 료

□ 세계 항공우주산업 전망 <보잉사 예측>

◇ 항공우주산업 수요 전망

◦ 세계 항공여행 시장은 경제발전에 비례하여 성장함

◦ 3회 발생한 수요침체는 문제점들이 개선되면 즉시 시장 회복
(아래도표의 검정 막대)

◦ 1992년말 항공운항 사업은 걸프전에 의해 악화된 세계경제의 구조적 문제들로 인해 고전
- 부채 및 수입 감소
- 고객의 저신뢰도, 저실업율 및 경비 절감
- 냉전종식에 의한 과도기적 현상
- 재산가치의 감소 및 자금 압박

◦ 항공여행은 6.9% 성장하였으나 항공사들은 낮은 항공료로 인해 계속 적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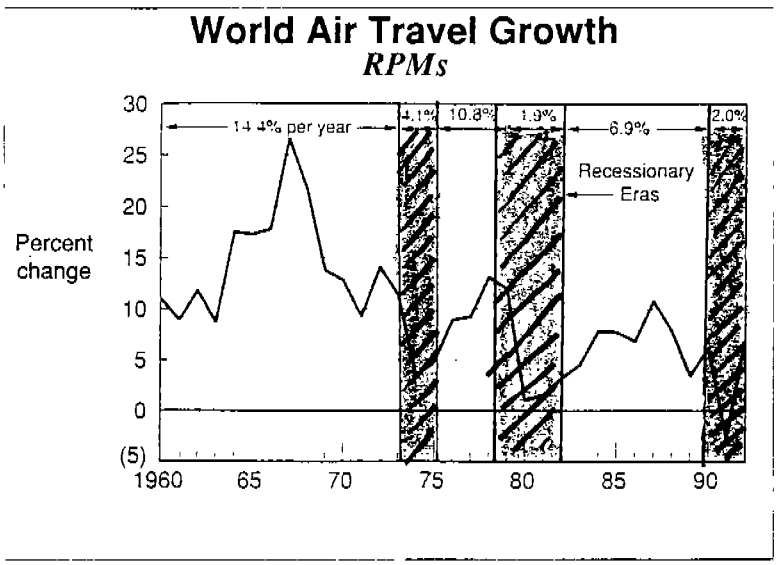

◇ 항공기 주문과 인도

- 1992년 항공기 인도는 789대로 443억달러 수준임(환율 1993년)
- 항공기 과다보유, 재정난, 낮은 항공 여행성장 및 운영손실로 인해 482대 299억달러로 감소
- Boeing은 시장점유율은 61%, 271억달러, 446대를 인도
- Boeing의 총 주문재고는 1020억달러, 1451대에 이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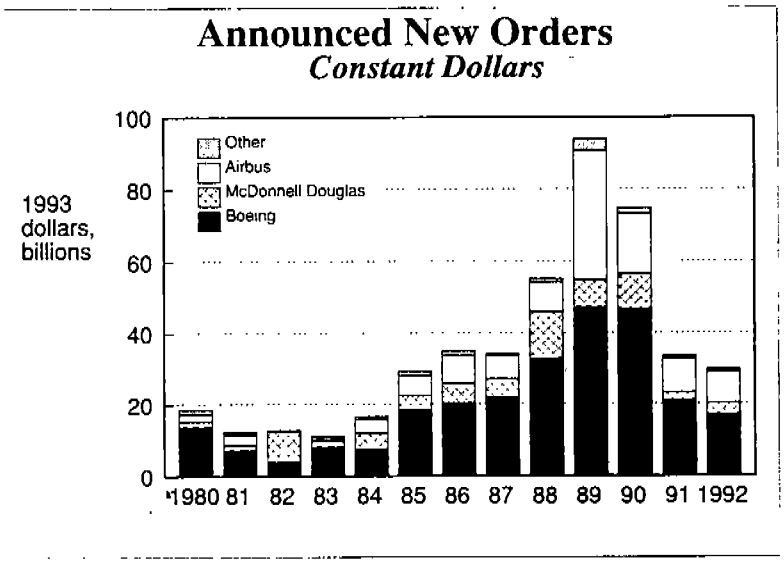

◇ 항공여행전망(수요)

- 항공여행은 항공사들이 '92년도의 인위적인 저 운임에서 인상시킬 것이 예상되나, 세계경제가 회복됨에 따라 '93년에도 5.3% 성장전망
- 항공여행은 경제가 개선되고 항공사들이 항공여행을 촉진함에 따라 2000년까지 연평균 5.4% 성장이 기대됨
- 이러한 성장율을 볼 때 2010년에는 2000년에 비해 2.5%가 증가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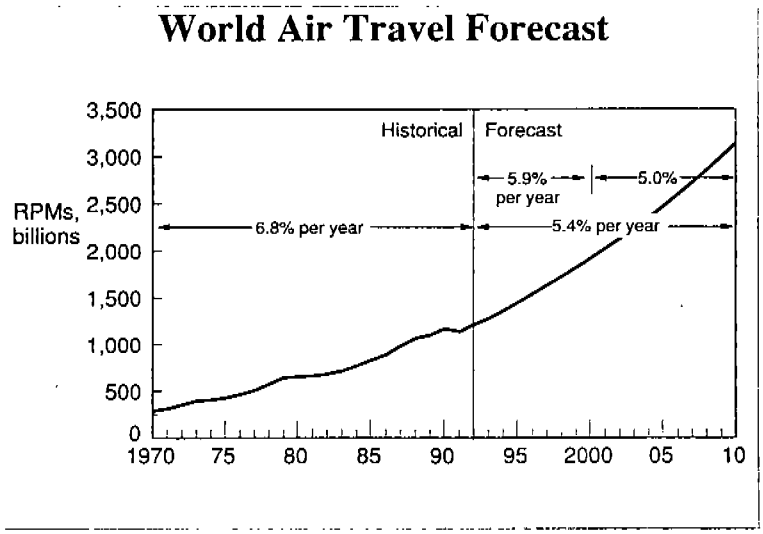

◇ 항공기 퇴역 전망

◦ 상용항공기의 퇴역은 현재까지 2100대에 이름

◦ '92년에는 155대가 폐기되었으나 750대 이상이 주기장에 주기되어 있으며 대부분 운항이 재개되지는 않을 것임

◦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항공기의 퇴역가능성이 급증할 것임

- 20년 이상된 항공기수가 2100대 이상임
- 60년대 후반 항공기 인도의 급증과 소음규제로 인해 90년대에 더 많은 항공기의 퇴역이 예상됨
- 항공기의 수명을 20-30년으로 볼 때 2010년까지 총 4,400-8,400대가 퇴역할 것으로 예상됨

1993 ~ 2000 ~ 2010

↓ ↓

2100대 1500대

(연평균260대) (연평균 150대)

◦ 항공기의 평균수명

단일통로여객기	25년
2중통로 여객기	28년
화 물 기	35년

◦ Stage 1, 2의 항공기는 92년 까지 여객기로 사용되었으나 2010년에는 100대만이 여객기로 사용되고 나머지 3/4은 화물기로 사용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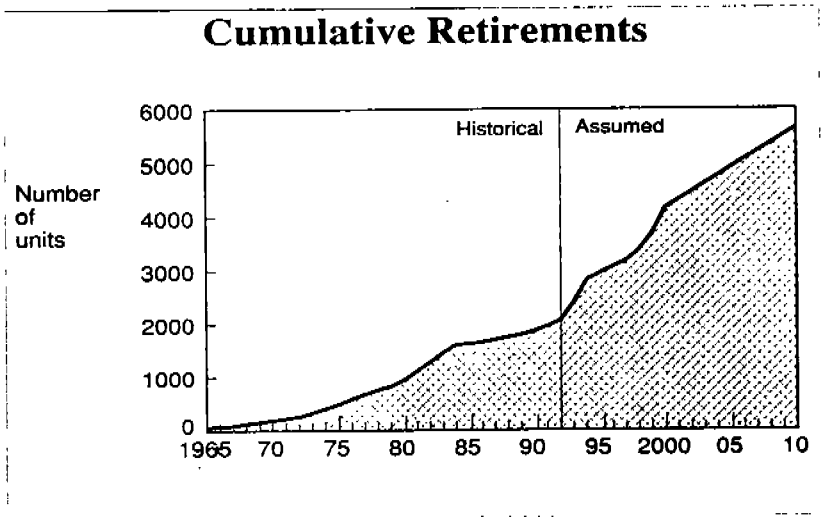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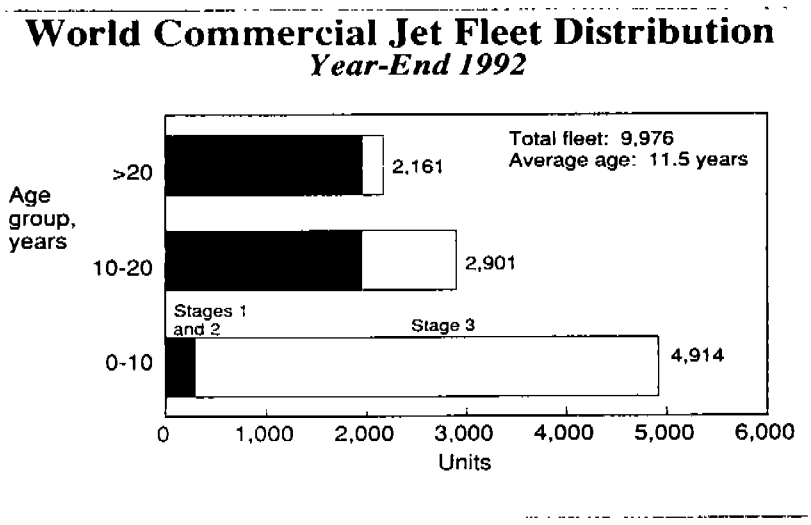

◇ 항공기 인도

▫ 퇴역항공기의 교체와 여행규모의 실질적인 성장으로 2010년까지 8150억달러의 시장전망<92년도의 Current Market Outlook의 전망치 보다 5% 낮은 수준임>

◦ 특이사항

- 수요의 75%는 시장증가에 의한 것이고 25%는 폐기 항공기 교체용임
- 지난 20년동안 연평균 인도액은, 65%는 기타 지역에 공급예정
- 2010년까지 중소형 항공기도 총 인도 항공기의 2/3를 차지예상
- 좌석수로 보면 2010년 까지 대형항공기가 전체의 58%차지 예상

World Airline Fleet Distribution

Categdry*	Models			1992 Units**	%	2010 Units**	%
70-90 seats	F-28 F-70 BAe 146	BAC1-11 DC9-10 RJ70/85		550	5.7	593	3.3
91-120 seats	727-100 737-100/-200/-500 DC-9 MD-87	F-100 Caravelle Concorde		2,433	25.2	2,801	15.6
121-170 seats	737-300/-400 727-200 720 707-120B	A319 A320 Trident-3 Mercure	MD-81/-82/-83/-88 MD-90 DC-8-10/-20	3,391	35 1	5,761	32.0
171-240 seats	757 767 707-300B/C	A310 A321 DC-8-30/-40/-50/-60/-70		1,262	13.1	3,455	19.2
241-350 seats	767 747SP A300	A340 L-1011 DC-10		1,171	12.1	1,951	10.8
>350 seats	747 777 747-X	A330 A340	MD-11 MD-12	843	8.7	3,439	19.1
Total				9,650	100	18,000	100

*Categories based on 36-in/32-in mixed-class configuration (includes freighters and combi airplanes in appropriate passenger category).
**Mid-year units

World Annual Commercial Airplane Deliver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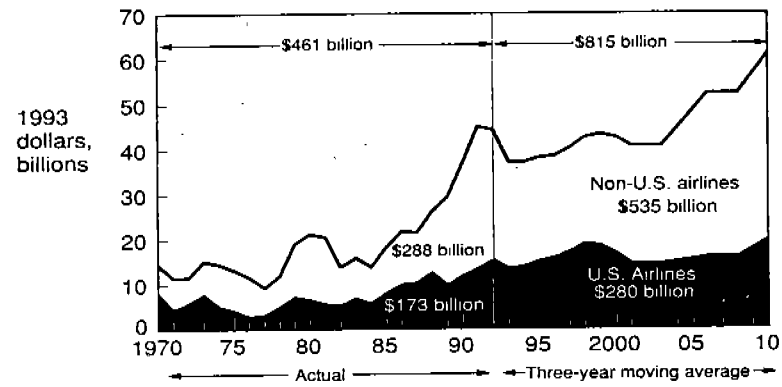

Historical Commercial Jet Order Share

Constant Doll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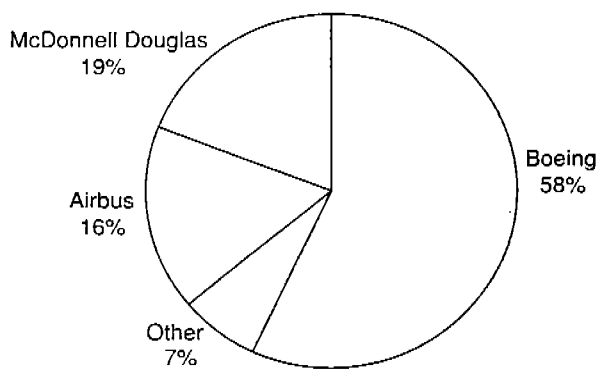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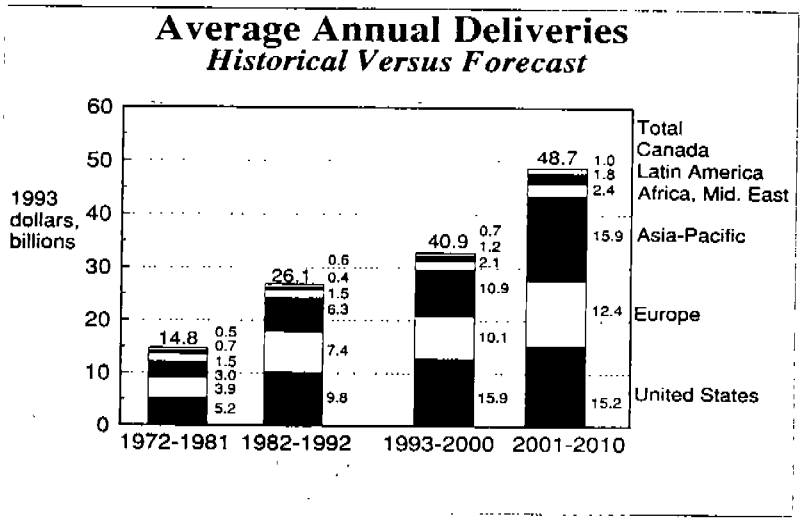
Average Annual Deliveries
Historical Versus Forecast
1993 dollars, billions
60
50
40
30
20
10
0
14.8
0.5
0.7
1.5
3.0
3.9
5.2
26.1
0.6
0.4
1.5
6.3
7.4
9.8
40.9
0.7
1.2
2.1
10.9
10.1
15.9
48.7
1.0
1.8
2.4
15.9
12.4
15.2
Total
Canada
Latin America
Africa, Mid. East
Asia-Pacific
Europe
United States
1972-1981
1982-1992
1993-2000
2001-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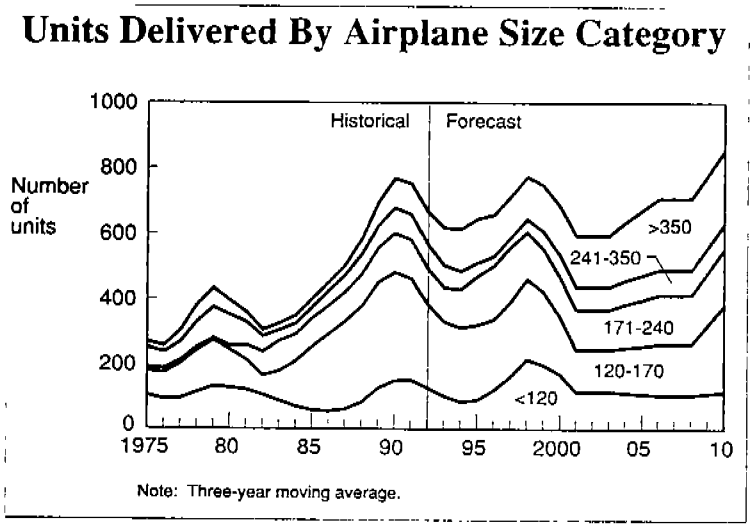
Units Delivered By Airplane Size Category
Number of units
1000
800
600
400
200
0
Historical
Forecast
>350
241-350
171-240
120-170
<120
1975
80
85
90
95
2000
05
10
Note: Three-year moving average.

Delivery Distribution

Historical* 1952-1992

Seat Category**	Models	1993 Dollars (Billions)	Share %	Units	Share %
70-90	BAe146 F-28 BAC1-11 DC9-10	15.3	2.7	833	6.4
91-120	727-100 737-100/-200/-500 DC9-30/-50 MD-87 Concorde Caravelle F-100 880 990	75.2	13.4	3,484	26.7
121-170	727-200 737-300/-400 707-120/-220 720 A320 MD-81/-82/-83/-88 DC-8-10/-20 Trident Mercure	136.4	24.3	4,127	31.7
171-240	757 767-200 707-320/-420 A310 DC8-30/-40/-50/-60	111.3	19.9	2,221	17.1
241-350	767-300 A300 747SP L-1011-1 DC-10	111.0	19.8	1,379	10.6
>350	747 MD-11	111.8	19.9	981	7.5
	Total	561.0	100.0	13,025	100.0

Forecast 1993-2010

Seat Category**	Models	1993 Dollars (Billions)	Share %	Units	Share %
70-90	BAe146 F70 RJ70/85	11.2	1.4	439	3.7
91-120	737-500 MD-87 F-100	53.3	6.5	1,823	15.2
121-170	737-300/-400 MD-81/-82/-83/-88 MD-90 A319 A320	130.7	16.0	3,320	27.7
171-240	757 767-200 A310 A321	134.5	16.5	2,454	20.4
241-350	767-300 A300-600 A340-200	98.2	12.1	1,118	9.3
>350	747 747-X 777 A330 A340-300 MD-11 MD-12	387.6	47.5	2,851	23.7
	Total	815.5	100.0	12,005	100.0

Share For Airlines by Geographic Area
1992 Delivery Doll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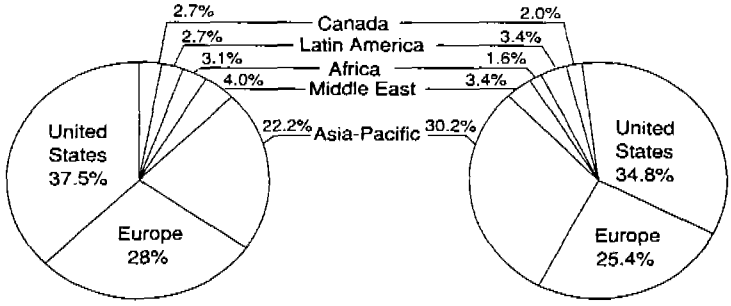

1970-1992
$461 billion

1993-2010
$815 billion

Historical Commercial Jet Order Market Share
Constant Doll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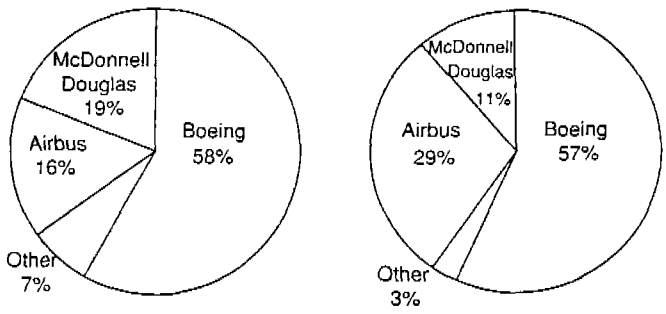

Through 1992

19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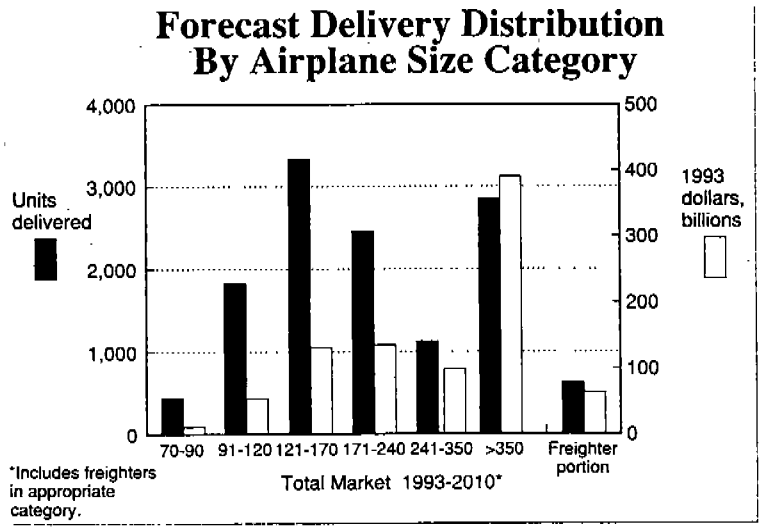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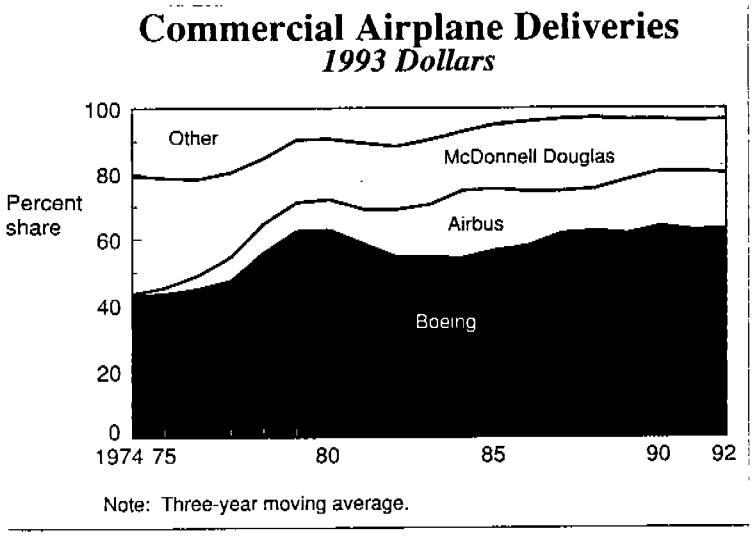

Note: Three-year moving average.

VI. 알 림

□ 한·러 과학기술협력센터, 단기실용화 검색사업 실시

◦ 목 적:
독립국가연합(CIS)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중 국내기업에 국제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술을 발굴하여 단기간내 이에 대한 분석, 검색, 평가를 실시하여 실용화 가능성 및 기술이전 방안을 구체화 하는 것이 본사 업에 목적이며 이를 활성화 시키고 지원하기 위하여 KIST 한·소 과학기술협력센타에서 본 사업 소요 연구비 일부를 출연함

◦ 대상기관: 정부출연(연) 및 관련 국내 기업

◦ 대상분야: 산업기술전반

◦ 지원대상과제:
상기 대상분야중 CIS(구소련) 연구기관 등에서 개발이 완료되어 국내기업화로 연결할 수 있는 기술, 또는 현재 산업생산에 직접활용하고 있어 기술이전이 가능한 과제 단, 과학기술처 지원 하에 수행 또는 예정인 한·소 국제공동 연구과제와 관련된 과제는 본 지원대상에서 제외 됨

◦ 지원내용: 1과제당 500-1,500만원이내

- KIST한·소 과학기술협력센타 및 참여기업의 부담비율은 각기 50%를 기준으로 지원대상과 내용에 따라 센타에서 조정할 수 있음
- 제한된 연구비 규모로 인해 한 기관에서 다수 과제 신청시 우선순위 부여 요망

◦ 연구기간 : 6개월 이내 ('93. 6월 착수예정)

◦ 연구결과 보고

- 계약 개시 일로부터 3개월 후 중간보고서 제출 6개월후 최종보고서 제출
- 최종보고서 불량은 A4용지 100매 내외이고, 양식은 본 센타 고유양식

◦ 연구결과 활용

- 주관연구기관이 연구결과 기업화가 유망하다고 판단되는 과제는 참여기업과 우선적으로 기업화를 추진함
- 기업화 성공시 해당활용 기업으로부터 KIST한·소 센타 부담연구비를 회수하여 타검색사업 수행을 지원함

2. 추진체계 및 일정

- 5.20 : 과제 신청
- 5.30 : 과제 심의·선정(KIST), 계약체결
- 6.30 : 연구수행
- 11.30 : 연구완료 및 결과보고
- 12.1 ~ : 연구결과 활용

3. 문의사항

- KIST 한·소 과학기술협력센터 기술협력실
(962-8801 구내 2773, 직통 969-6188, FAX 959-0448)

□ 러시아 첨단기술 전시회 및 세미나

◦ 주 최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부설 한·러 과학기술 협력센터
◦ 일 시 : '93. 5. 31 - 6. 2
◦ 장 소 : 대덕연구단지내 국립중앙과학관 특별전시실
◦ 전시내용 : 러시아가 세계적으로 기술우위에 있다고 평가되는 기계, 신소재, 광학부문의 51개 품목으로 실용성과 국내 파급효과 등을 엄선한 것

◇ 51개 전시품목

51개 전 시 품 목
<기계공학>
1. 레이저를 이용한 다성분 재료분석 기술
2. tornado-type vortex원리를 이용한 가스, 액체, 혼합유체 열교환 기술
3. 세라믹, 실리콘, 웨라이트 및 초경재료의 초미세 절삭 가공연마기술
4. 전기방전법에 의한 소형용접 및 절단기
5. 비 프레온 냉동기에 의한 천연가스 초급속 액화·냉동기술 (-70 C)
6. 고온 등온 프레스에 의한 유리재료의 성형기술
7. 자동차 레디알 타이어의 고도 전산화 및 자동화 생산공정 기술
8. 초용량 전기 이중층 축전기 생산기술과 그 시스템 기술
9. 다용도 운반 로보트 및 시스템 기술 (R.T.S.)
10. 전기방전, 진공증착 기술에 의한 박막코팅 형성기술 및 그 시스템
11. 판자(발판)조작이 가능한 벽면 승하강용 로보트 기술
12. 열가소성 재료 및 기타 용도의 정밀 사출성형 기술
13. 여러가지 재료의 동방·고압 및 고온처리 기술
14. 고출력 모터, 전자, 작동기계 등을 포함한 mechatronic형MRG-1모듈
15. 재료의 저온 확산 용접기술
16. Dies와 Press-molds 제조를 위한 자동전산 집적 생산 시스템 (CIM)
17. 고온가스 압출법에 의한 금형의 성형기술
18. C-BN, 세라믹 절단공구에 의한 철·비철금속의 초고속 절삭공정기술
19. 비공해성 고효율 연마공구의 생산기술
20. 렌즈 접합 공정용 centering 기술
21. 재료의 레이저 표식기술
22. 제트 박막여과법에 의한 용액(음료수, 유류, 하수 등)의 정제기술

23. 기류 확산 분사법(Tornado)에 의한 파이프 내연 연마 기술
24. 초고속 주사형 금속표면처리 기술(Superscan)
25. 다용도 자동 레이저 장비를 이용한 금속가공표면 검사기술
26. 소형, 소규모 동력의 구리증기레이저를 사용한 재료 표면처리 기술

〈신소재〉

27. 주파수 pulse 출력신호를 야기 시킬 수 있는 반도체 부품 생산기술
28. 고온·방사선 특성을 가진 실리콘 반도체부품생산기술(Hall:센서기법)
29. 실리콘기판상에 고온초전도 박막형성기술
30. 광범위한 용도를 가진 질화규소 및 첨단재료부품 생산기술
31. 초고온 질화붕소 세라믹스(boron nitride ceramics)제조기술
32. 급속냉각법에 의한 Nano 결정합금 및 비정질 합금 band 생산방법
33. 티탄합금 알갱이를 이용한 소결여과제 생산기술
34. SHS에 의한 마그네트론 진공증착용 복합 target 재료 제조기술
35. 폐타이어로부터 미세고무분말 생산 및 기계기술
36. 자율절약형 자동차 타이어 자동생산 설비
37. 세라믹 및 복합재료를 이용한 자동차 엔진용 소형부품 제조기술
38. 비정질합금 리본생산 장비 및 기술
39. 단일결정 다이아몬드 합성기술
40. 전자파에 의한 세라믹 재료의 소결공정기술
41. 금속유기화합물 증착기술에 의한 프레스판 및 공구표면 코팅용 기술
42. 초정밀 비철금속 롤링공정을 위한 신재료, 장비 및 그 부대기술
43. 새로운 연마제 'RUPOL'의 생산기술
44. 부유대역장치에 의한 결정성장 기술
45. 전기광택용(LITHIUM NIOBATE $LINBO_3$)단결정 생산기술
46. 탄소-탄소 및 탄소-흑연 복합재료 제작기술
47. 아크릴마이드 생산을 위한 MICROBIAL공정
48. 난연성 발포수지재료의 생산기술

〈기타〉

49. 광대역 확성기 'ANGSTROME'
50. 자원절약형 올리고머 타이어 제조기술
51. 진공 플라즈마 공정에 이용되는 플라즈마 장치

항공우주산업 발전을 위한 의견이나 신개발품 또는 주요 행사등 본 동향지에 기고할 내용이 있으시면 협회 기획과 편집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화: 553-5681/2)